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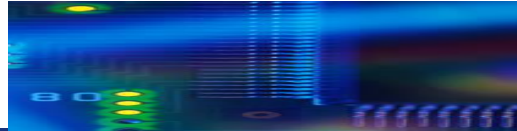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회

2021.2.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주대학교



Contents

1

인사말

안영찬 팀장(산학지원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안영찬 팀장(산학지원팀)

3

용어 변경 및 2021년 달라지는 연구제도

정수현 파트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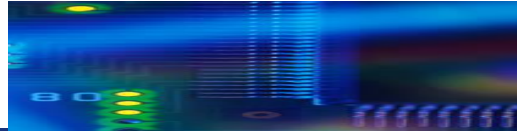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이은미 파트장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 연구수당 / 간접비

이관용/손보연/최정아 파트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정 배경**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자율적인 연구개발환경을 조성

혁신법

- 5개 장, 41개 조
- 하위법령 및 규정
 - 시행령
 - 시행규칙
 - 9개 행정규칙

시행령

- 5개 장, 67개 조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행규칙

-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
- 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



혁신법 핵심 내용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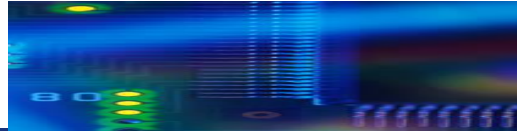
- 상향식 과제기획 원칙
-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 연구개발과제 협약·평가·정산의 주기를 연차에서 단계로 전환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 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항

- **성실실패** 제도화
-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의 재검토
-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 처분의 강도 강화



혁신법 기대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

복잡한 관리규정
간소하게 정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연구전념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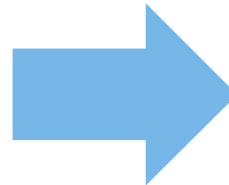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촉진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 창출



용어 변경

변경 전
연구기관
참여율
참여연구원
학생연구원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연구 지원인력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간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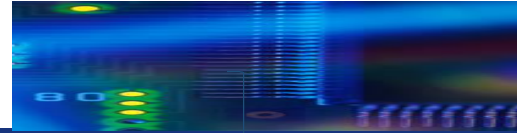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주관, 공동, 위탁)
인건비계상률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지원인력(간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년 달라지는 연구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본방향

연구제도 개선체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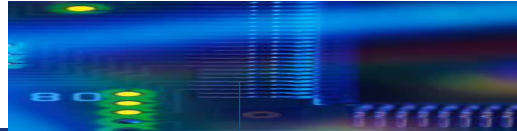
연구자 중심
체감 촉진
상시 개선
일관성 강화
체계성 제고

연구제도의 변화

신뢰 기반
자율성 제고
유연성 강화
중장기적 시각
행정부담 경감

연구지원 체계의 변화

지원체계 구축
지원역량 제고
책임성 강화



달라지는 연구제도

연구제도 개선체계의 변화

1.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이 혁신법으로 일원화됩니다!
2.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IRIS)됩니다!
3. 연구자 중심의 상시 제도개선 체계가 구축됩니다!
4.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체감 속도가 높아집니다!

연구지원 체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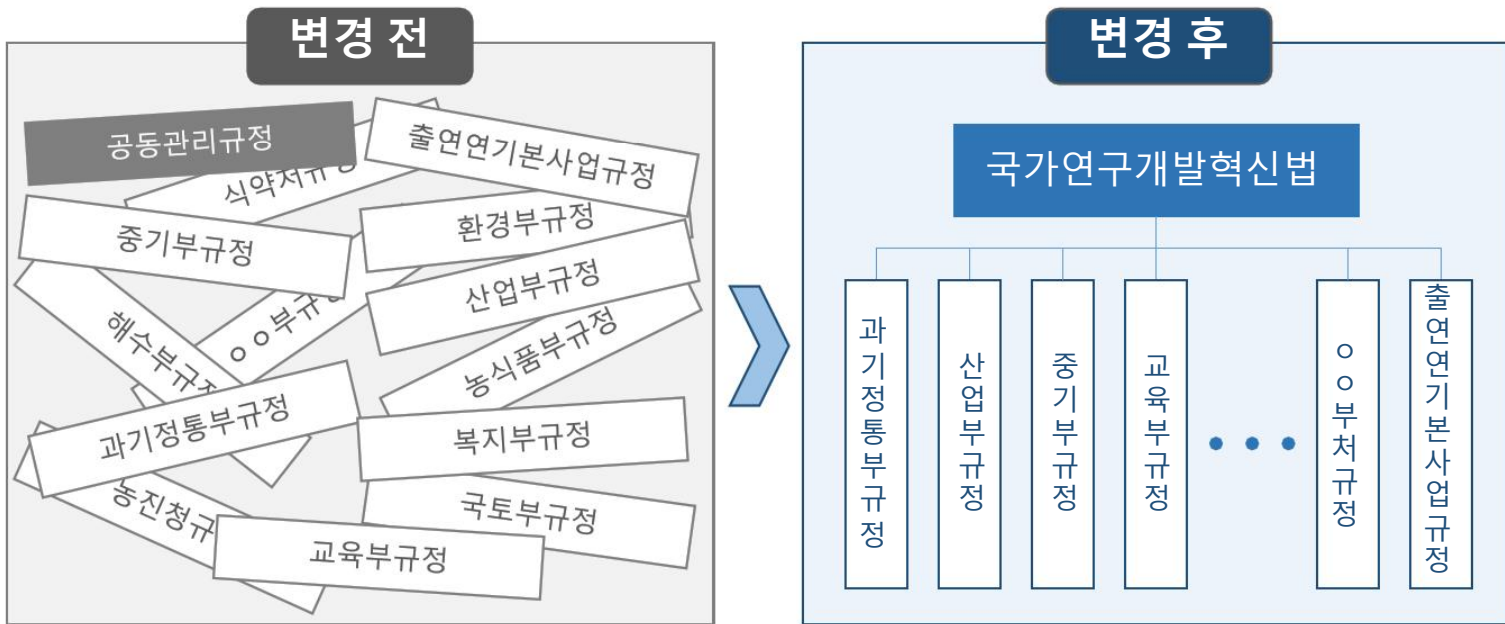
33.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이 체계화됩니다!
34.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효율화됩니다!

연구제도의 변화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고 제도가 신설됩니다!
6. 연구자 역량과 연구계획의 충실성 중심으로 과제가 선정됩니다!
7. 과제 협약기간이 전체 연구개발기간과 일치됩니다!
8. 연구기관의 과제 협약 권한이 확대 됩니다!
9.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이 간소화됩니다!
10. 연구비 사용계획은 연구기관(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정부출연기관의 국내출장 운임비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12.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13. 연구비 지급 지연시 연구기관 자체재원 사용이 인정됩니다!
14. 기초연구사업에서는 직접비/간접비가 분리 지급됩니다!
15. 긴급상황 시 연구시설/장비 구매제한이 완화됩니다!
16. 연구재료는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7. SW활용비는 과제가 종료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19.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20. 전자문서는 종이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21.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이월됩니다!
22. 연구비 사용 증빙이 간소화됩니다!
23.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과정보다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24.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25. 모든 대학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26.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제한이 완화됩니다!
27. 한 학기 학생인건비 일괄 선지급이 가능해집니다!
28. 학사→석사→박사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29. 3책5공 제도가 완화됩니다!
30. 참여율 관리가 폐지되고, 인건비계상률 관리로 대체됩니다!
31.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됩니다!
32. 연구현장 스스로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33. 제재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신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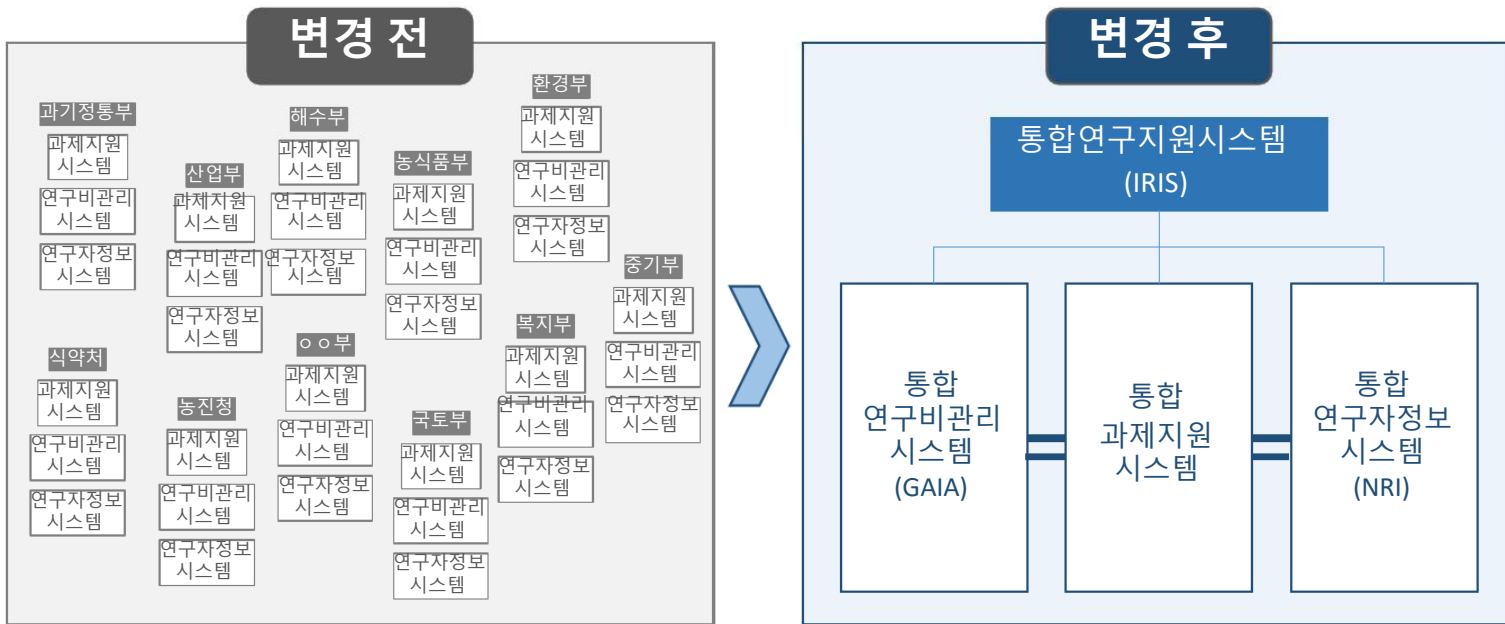
1.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이 혁신법으로 일원화됩니다!

“ 부처별 상이한 규정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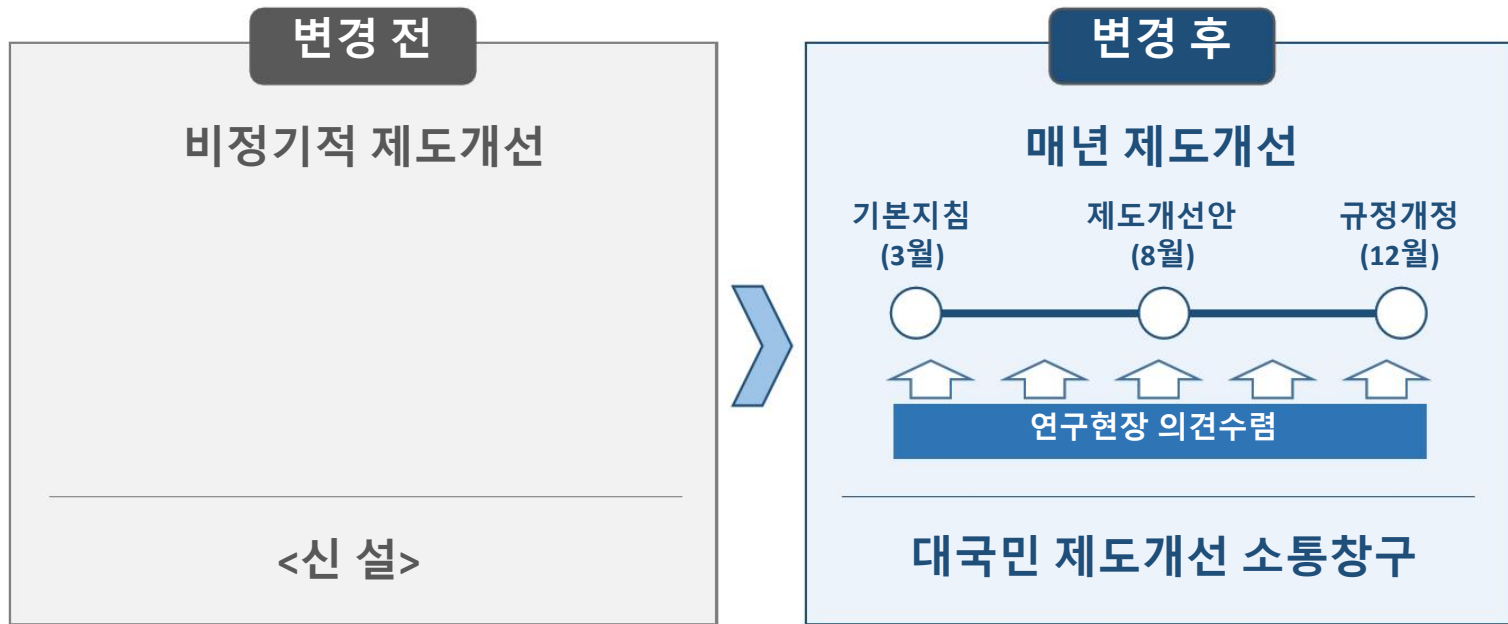
2.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IRIS)됩니다!

“ 부처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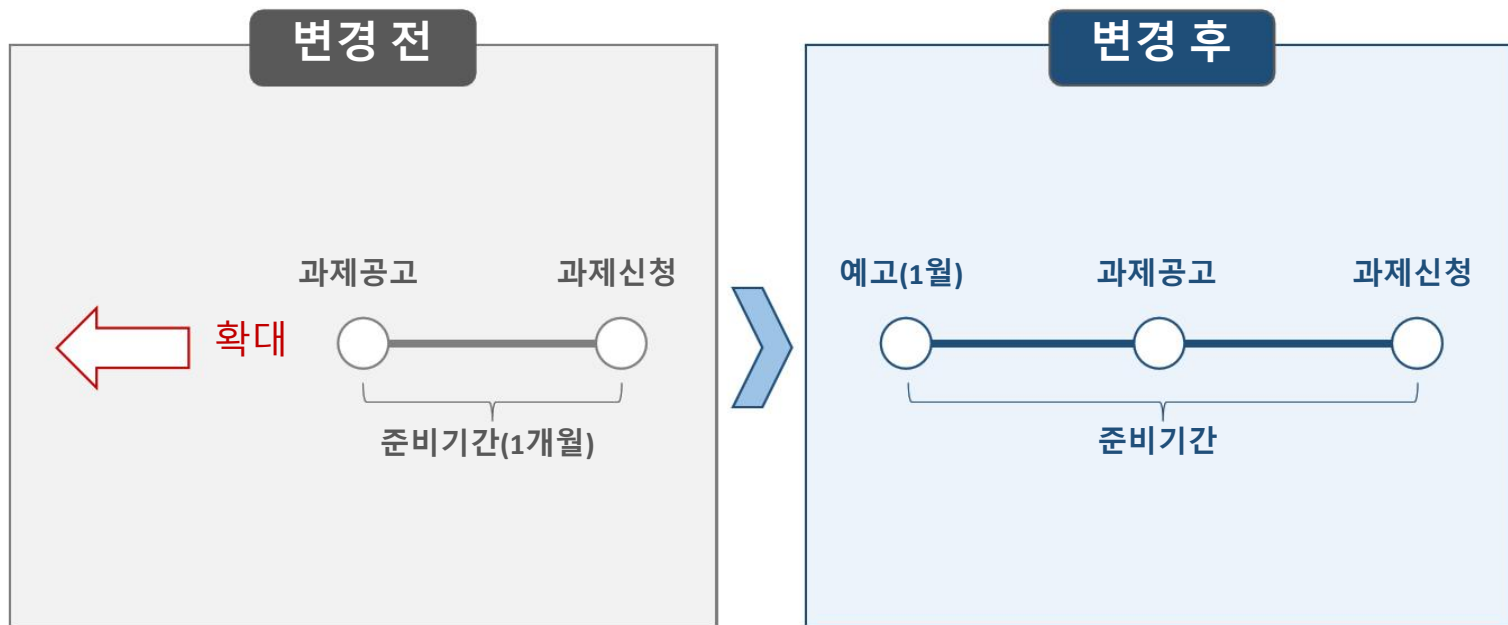
3. 연구자 중심의 상시 제도개선 체계가 구축됩니다!

“ 늘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자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고 제도가 신설됩니다!

“ 연구자가 미리 과제 공고를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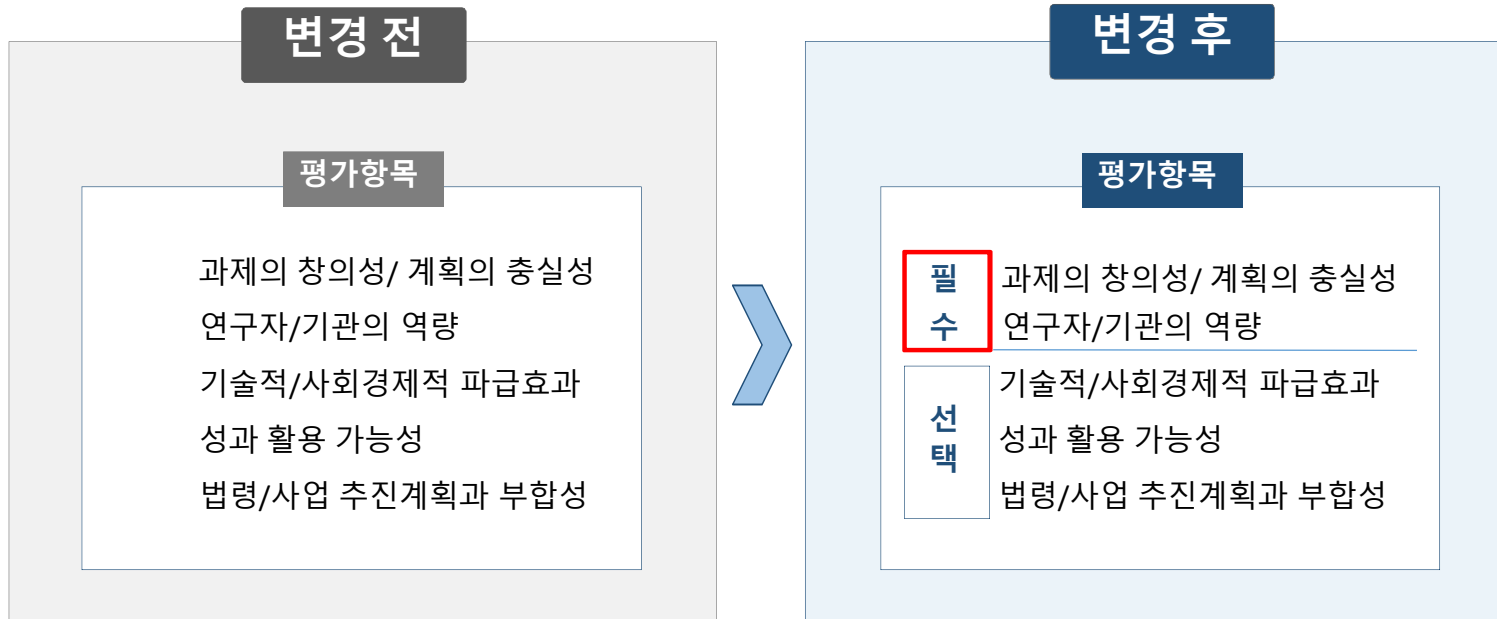
5. 연구자 역량과 연구계획의 충실성 중심으로 과제가 선정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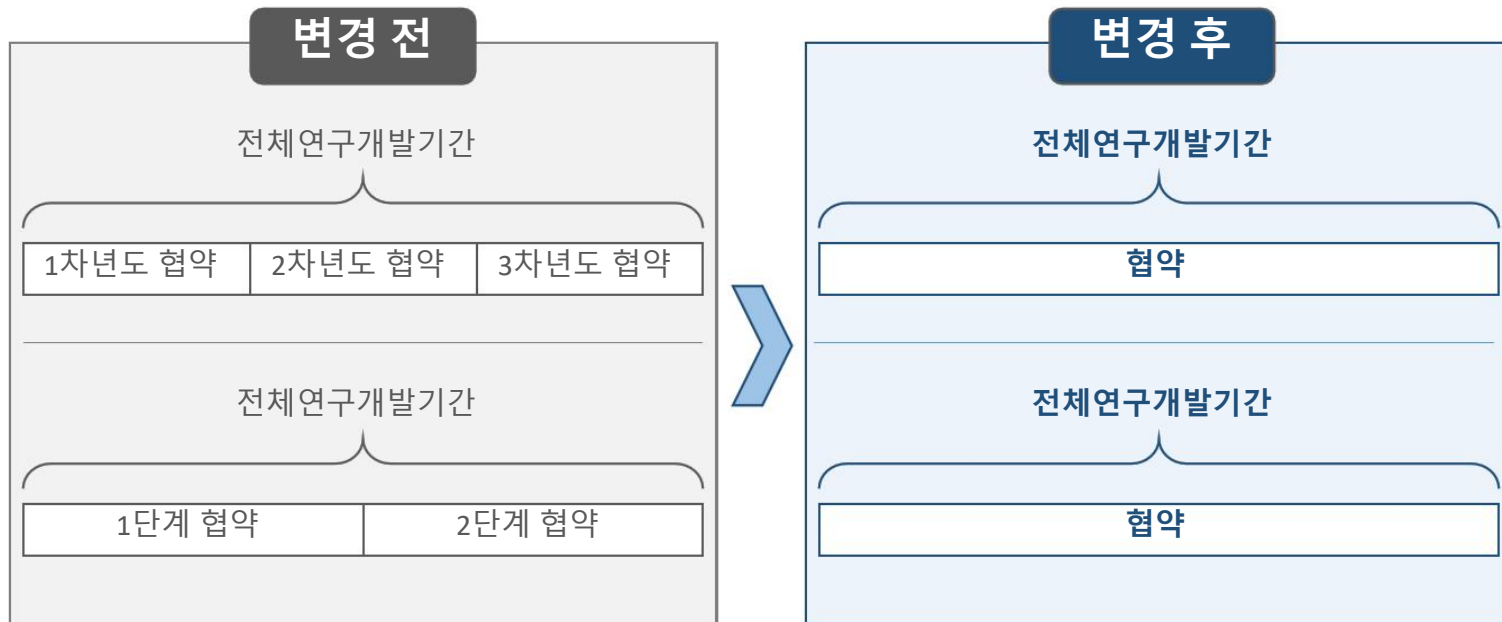
우수한 연구자의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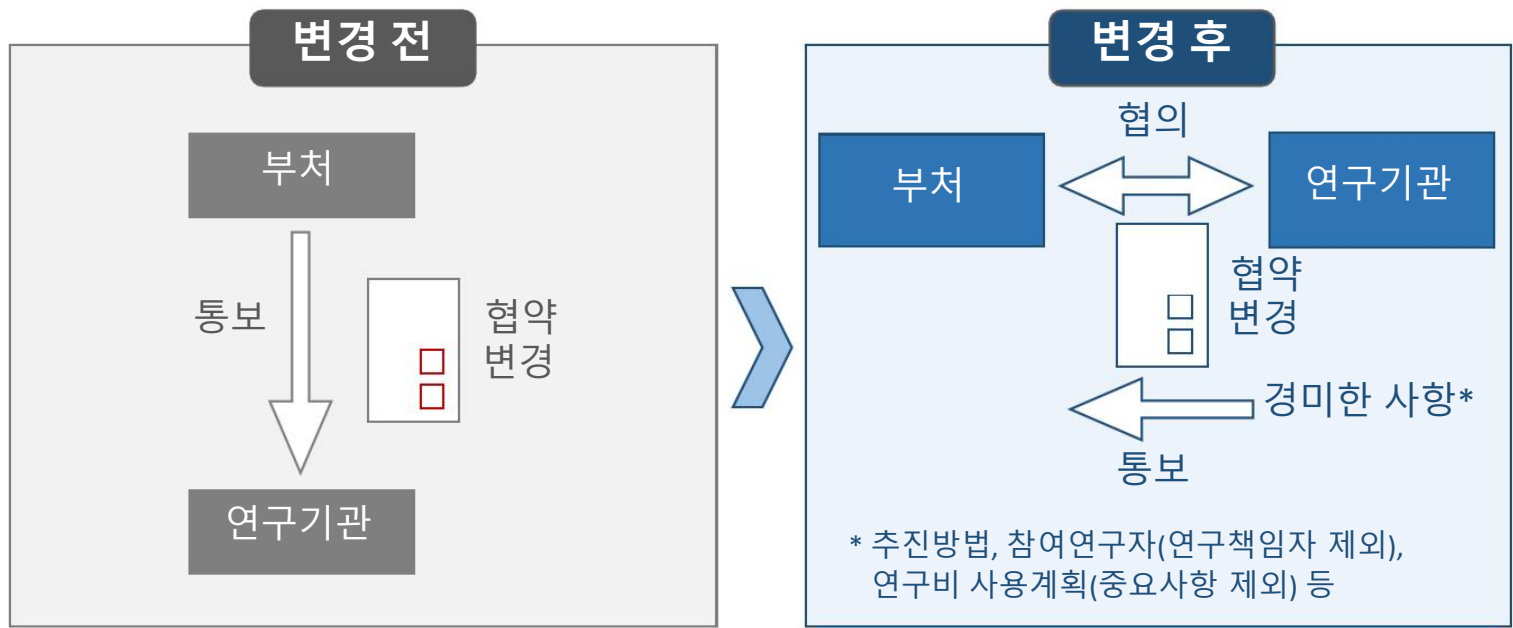
6. 과제 협약기간이 전체 연구개발기간과 일치됩니다!

“ 다년도 과제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지원·관리하겠습니다 ”



7.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협약 권한이 확대됩니다!

“ 연구기관/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높ی겠습니다 ”



8.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이 간소화되고,
사용내역/ 연구자별 참여율 작성이 폐지됩니다!



“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겠습니다

”

변경 전

	참여연구자	참여율	금액	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내역	수량	단가	금액	계
연구재료비	내역	수량	단가	금액	계
연구활동비	내역	금액	계		



변경 후

	참여연구자	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계
연구재료비		계
연구활동비		계

* 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는 내역 작성

과제 수행 비용은 연구비 사용계획에 명시
없이도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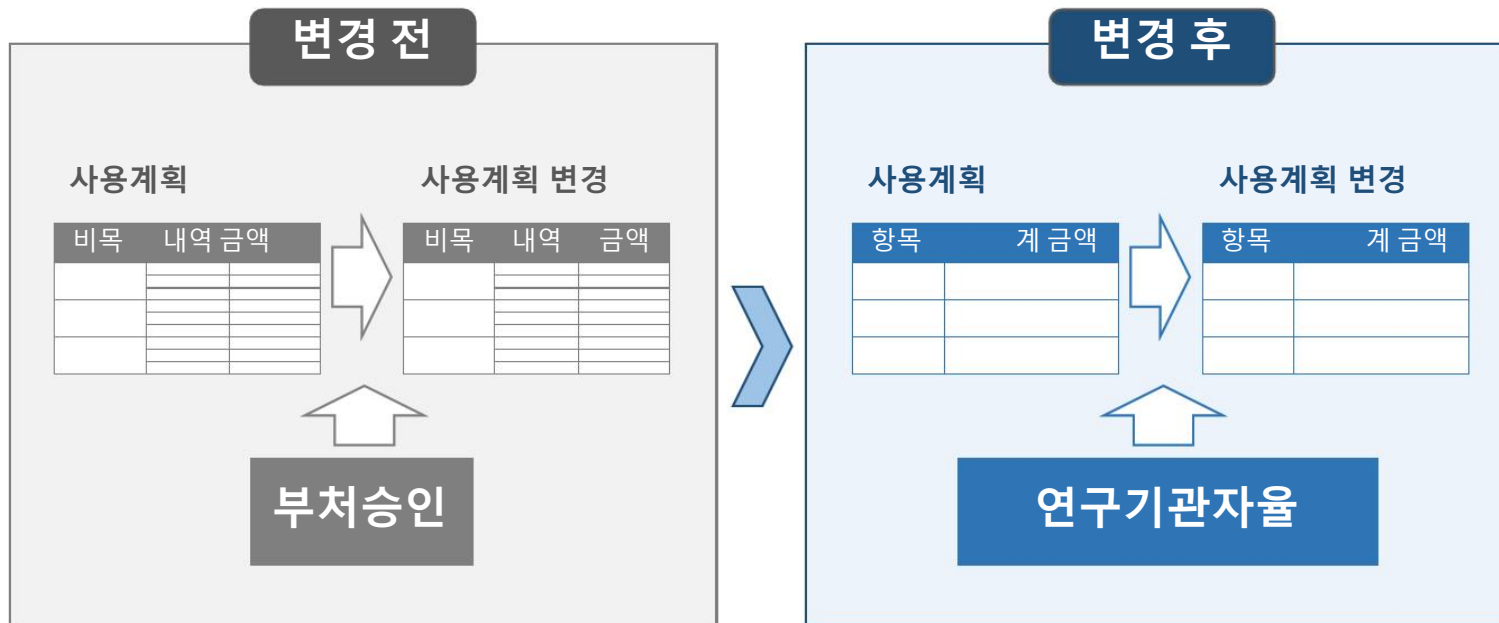
[9. 연구비 사용계획은 연구기관/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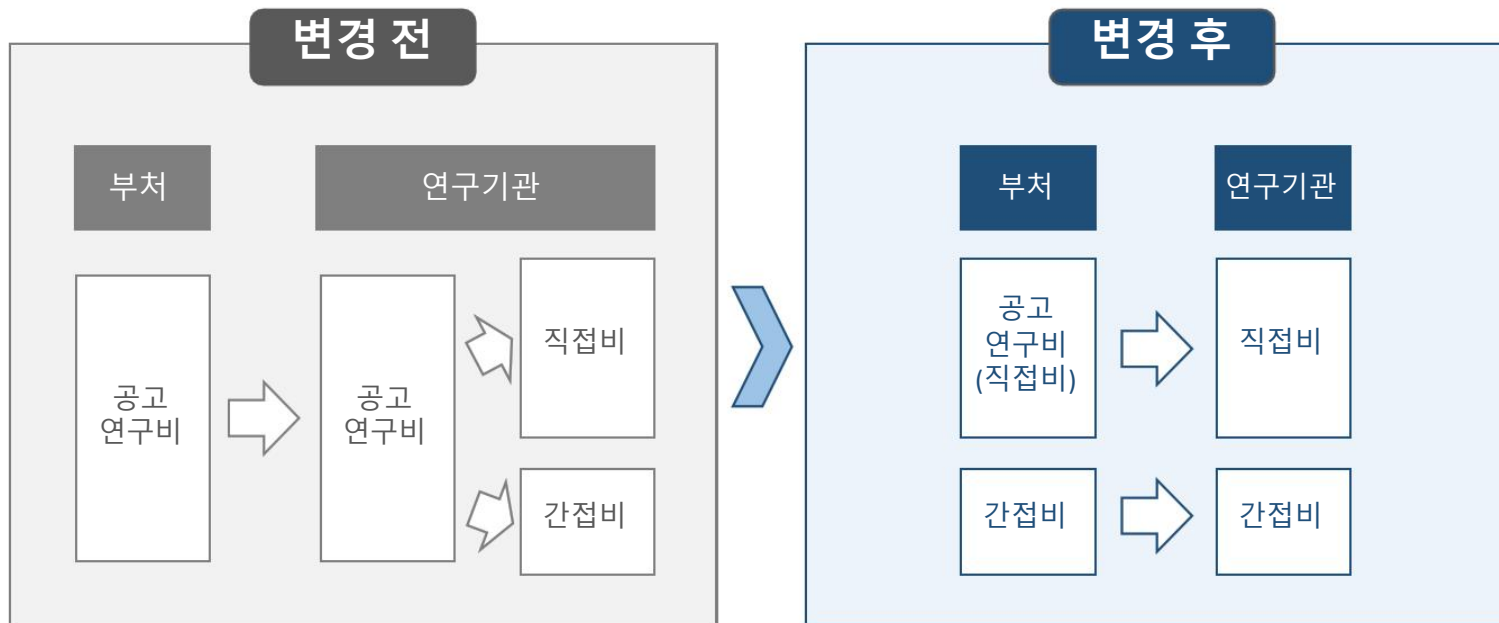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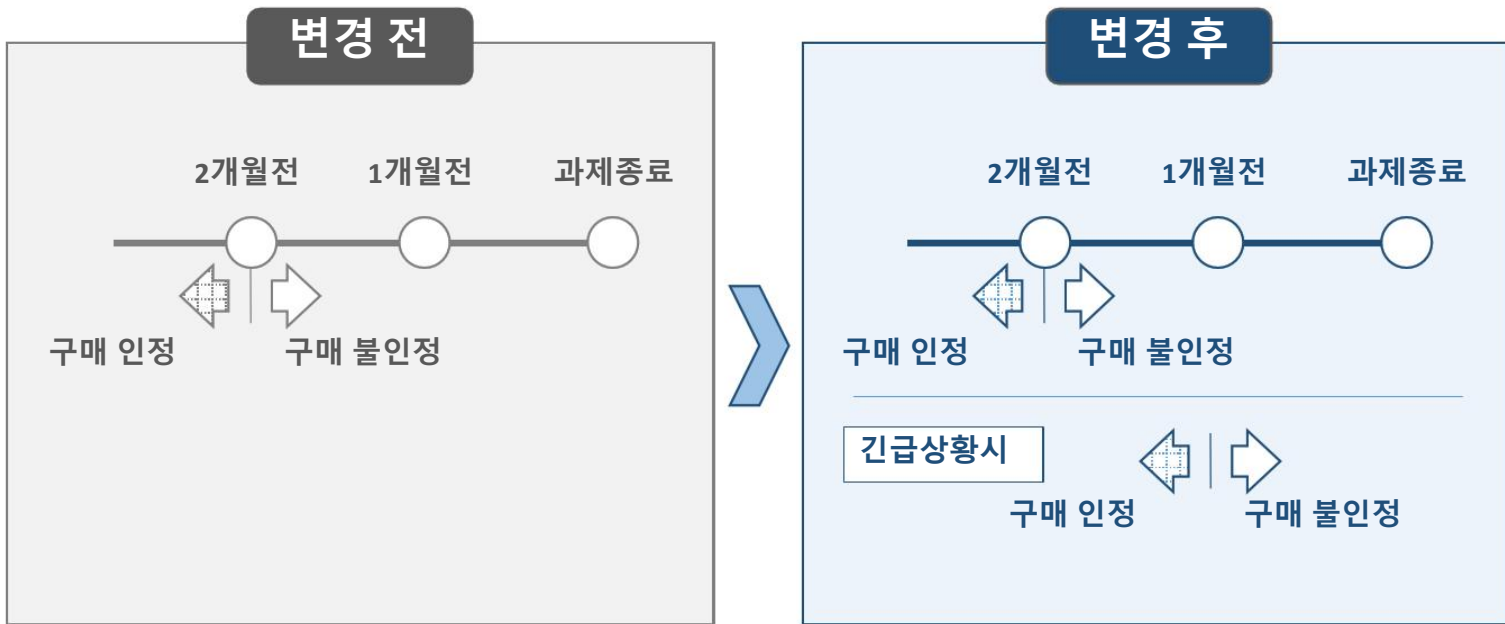
10. 기초연구사업에서는 직접비/간접비가 분리 지급됩니다!

“ 연구자는 연구에, 지원인력은 연구지원에 집중을 지원하겠습니다 ”



11. 긴급상황 시 연구시설/장비 구매시한이 완화됩니다!

“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긴급상황에 대응력을 높ی겠습니다 ”



12. 연구재료는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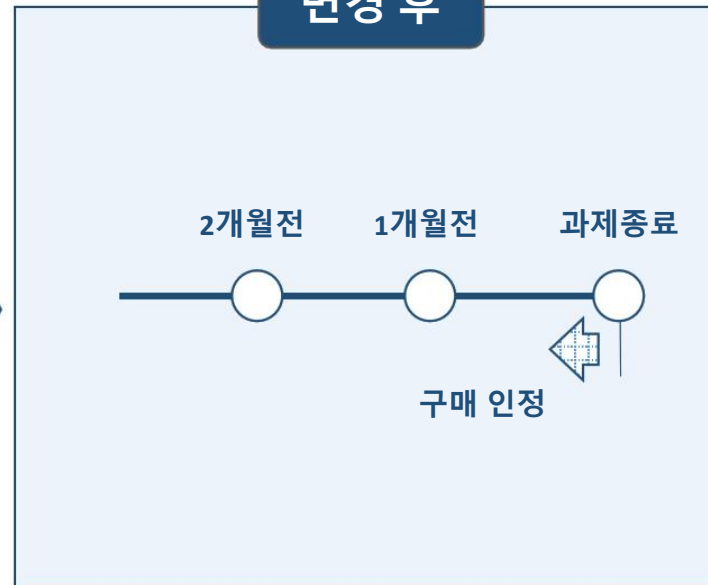
”

'20년 제도개선

변경 전



변경 후



[13. SW활용비는 과제가 종료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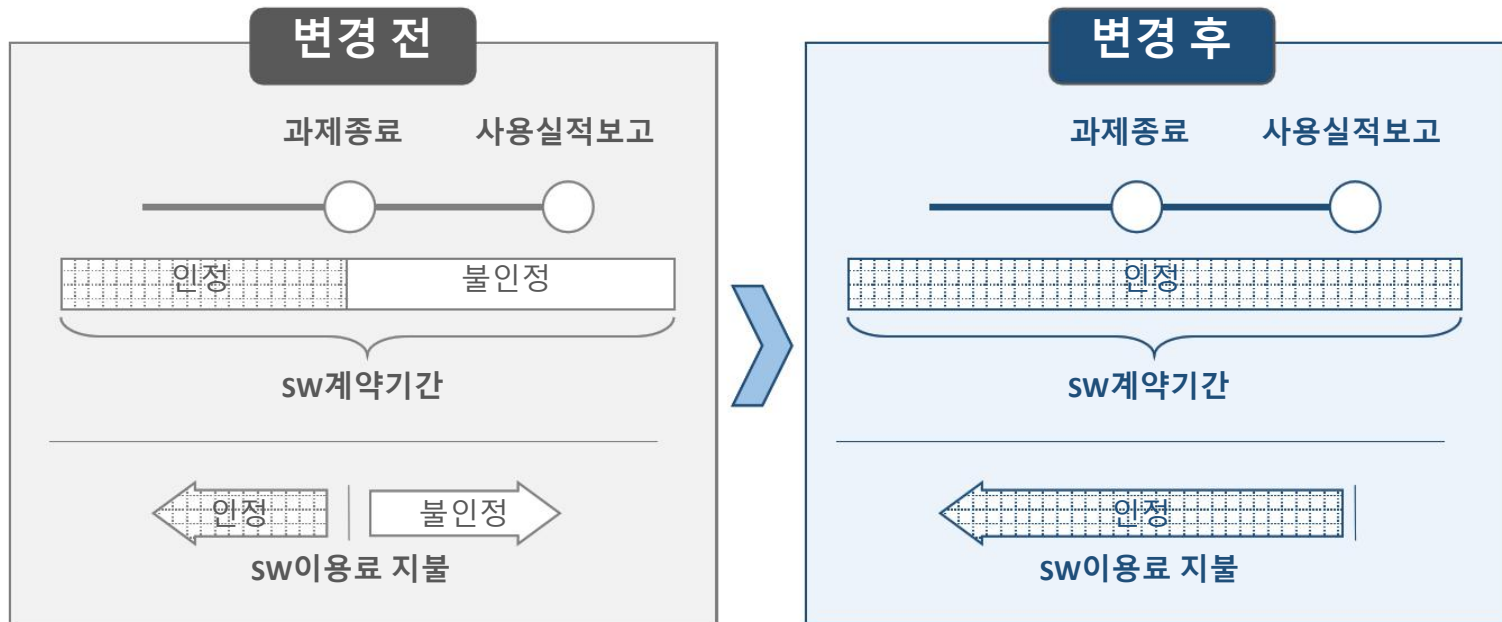


“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14.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지원 서비스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변경 전

연구근접지원인력 사용가능 연구비

인건비

간접비

* 단, 인건비와 간접비 중복지급 불가



변경 후

연구근접지원인력 사용가능 연구개발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 단, 인건비와 간접비 중복지급 불가

15. 전자문서는 종이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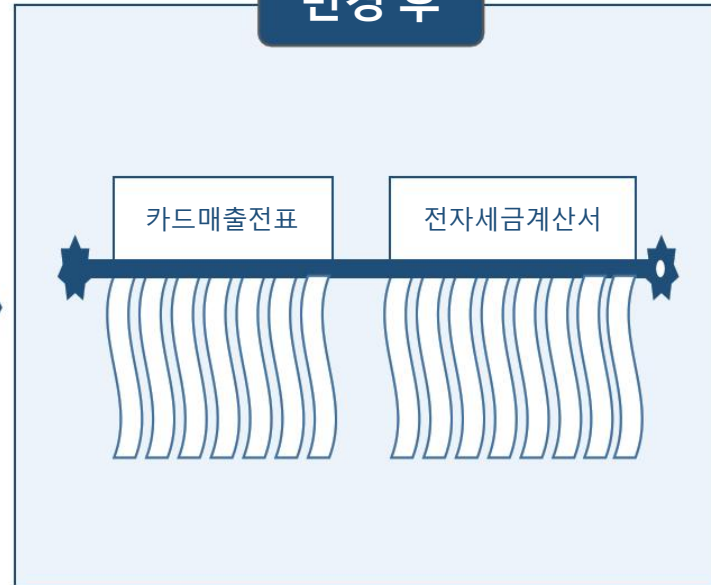
”

'20년 제도개선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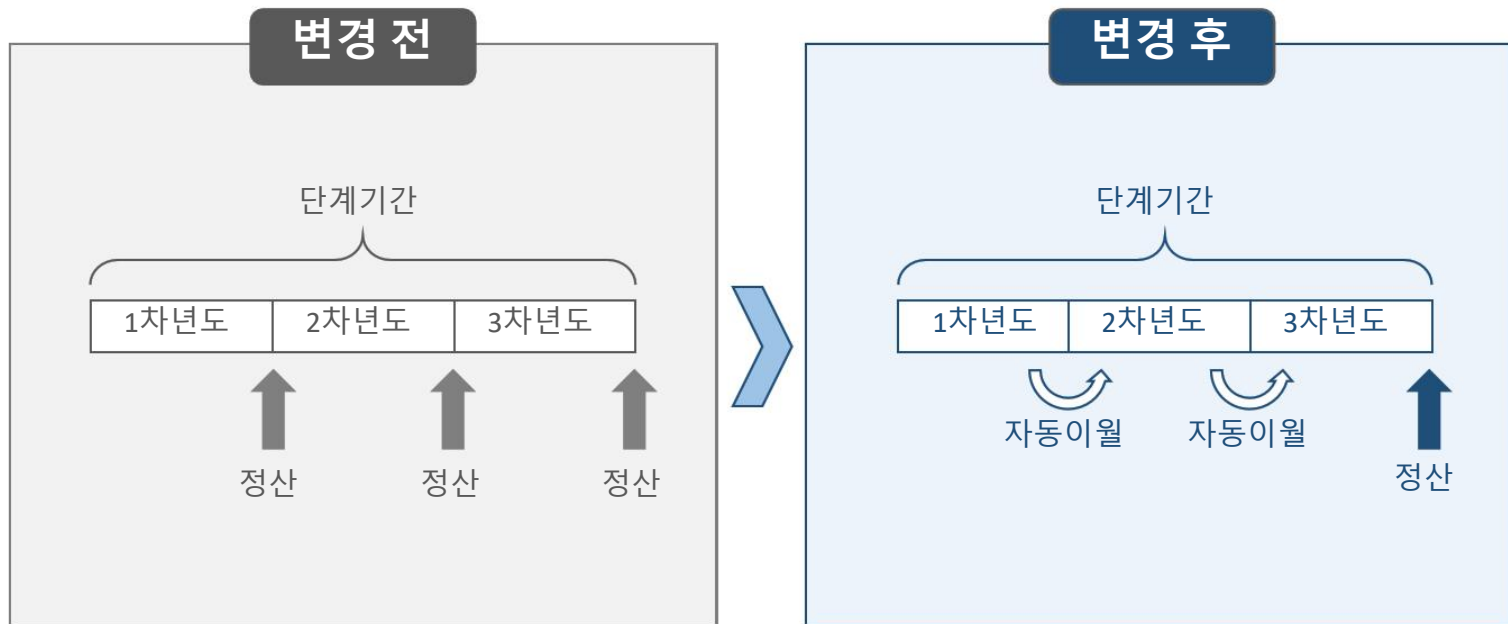


변경 후



16.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이월됩니다!

“ 정산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ی겠습니다 ”



17. 연구비 사용 증빙이 간소화 됩니다!



“

중복적인 자료 요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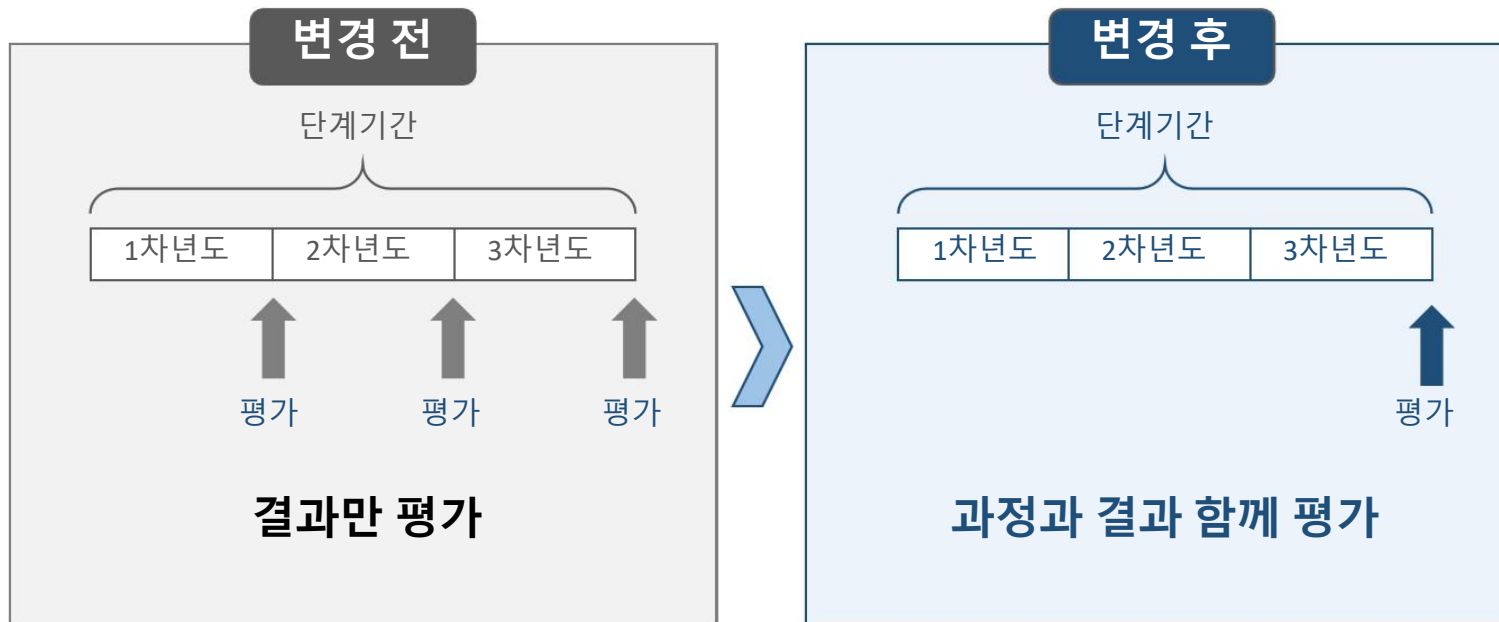
변경 후



시스템 등록자료로 정산 원칙
오프라인으로 중복자료 요구 금지

**[18.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과정도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
창의적인 연구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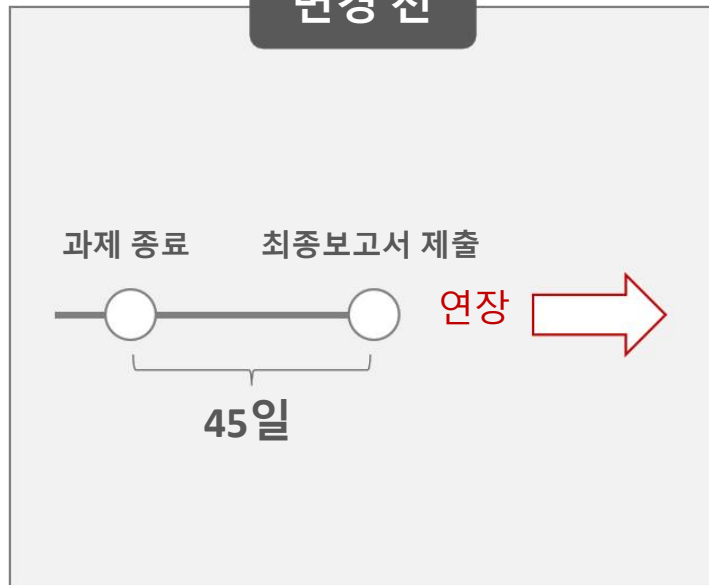
“

충실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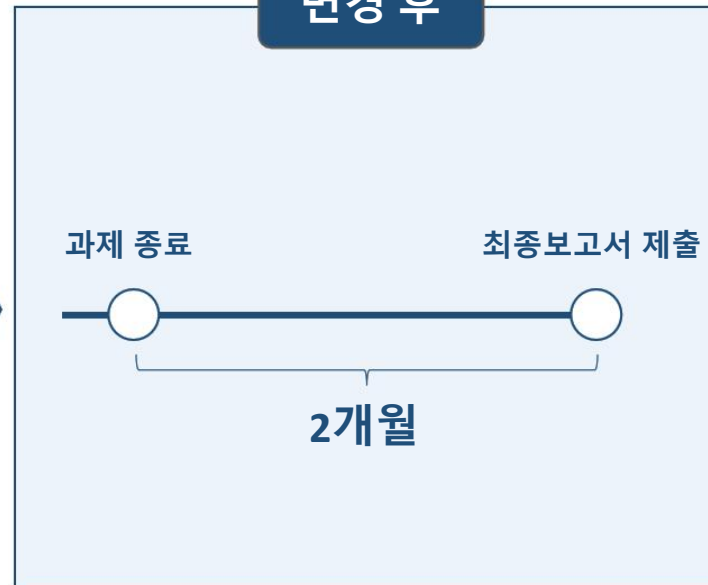
”

'20년 제도개선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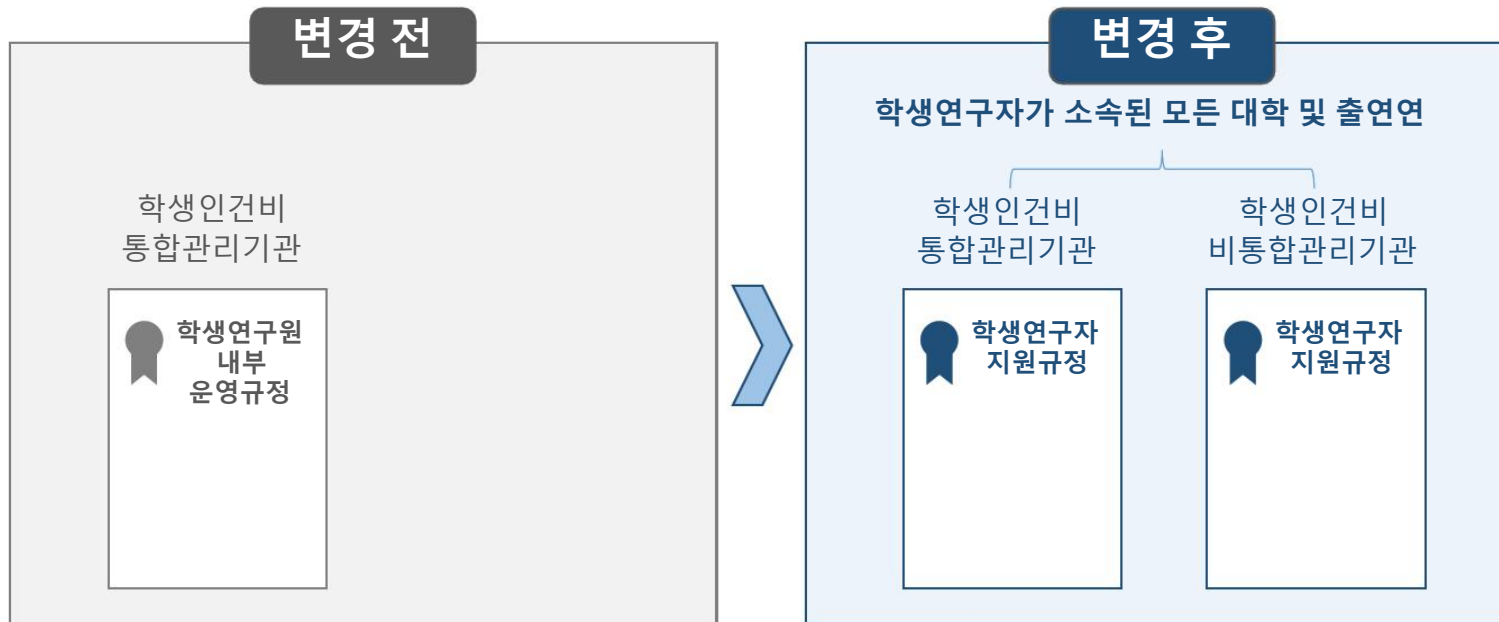


변경 후



[20. 모든 대학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 학생연구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21.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제한이 완화됩니다!



“

학생연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 전



변경 후



22. 학사→석사→박사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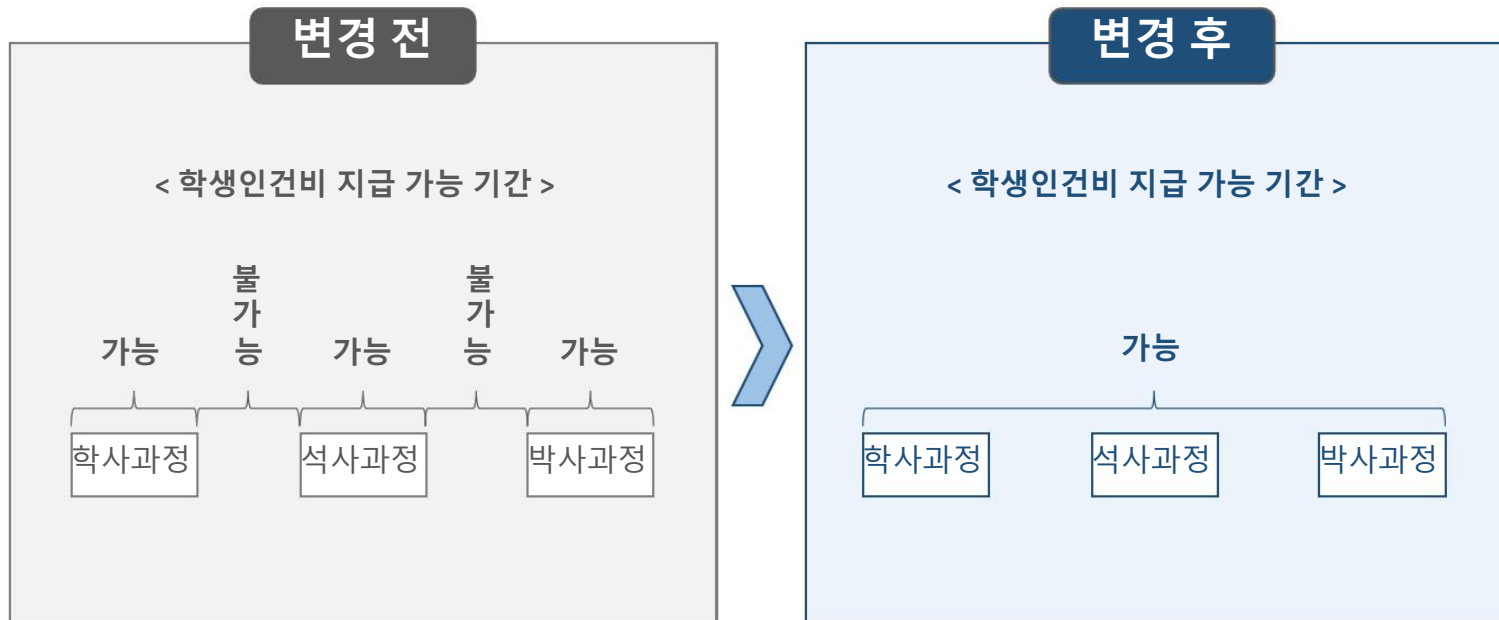


“

학생인건비가 단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23. 3책5공 제도가 완화 됩니다!



“

연구 역량과 의욕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변경 전

연구자의 의무사항

제외과제

6개월 내 종료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시험/분석연구
과제 조정/관리과제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연구
5천만원 이내 소액과제



변경 후

부처의 재량사항

제외과제 확대

변경 전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인력양성,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과기자문회의 심의과제
(소부장, 코로나19, 탄소중립, 소액과제 등)

24. 참여율 관리가 폐지되고,
인건비계상률 관리로 대체됩니다!



“

연구 역량과 의욕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변경 전

참여율 = 실제 참여율과
인건비계상률 개념이 혼재

과제 참여시 반드시 참여율 계상
참여율 100% 한도(정부출연기관 130%)

→ 참여율 한도 초과시
과제 추가 참여 불가

변경 후

인건비계상률로 일원화

과제 참여시 인건비계상률 미계상 가능
인건비계상률 100% 한도(정부출연기관 130%)

→ 인건비계상률 한도 초과시에도
인건비계상률 미계상으로
과제 추가 참여 가능

25. 연구현장 스스로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연구현장 주도의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변경 전

개념

부정행위 검증/처분

주체

정부



변경 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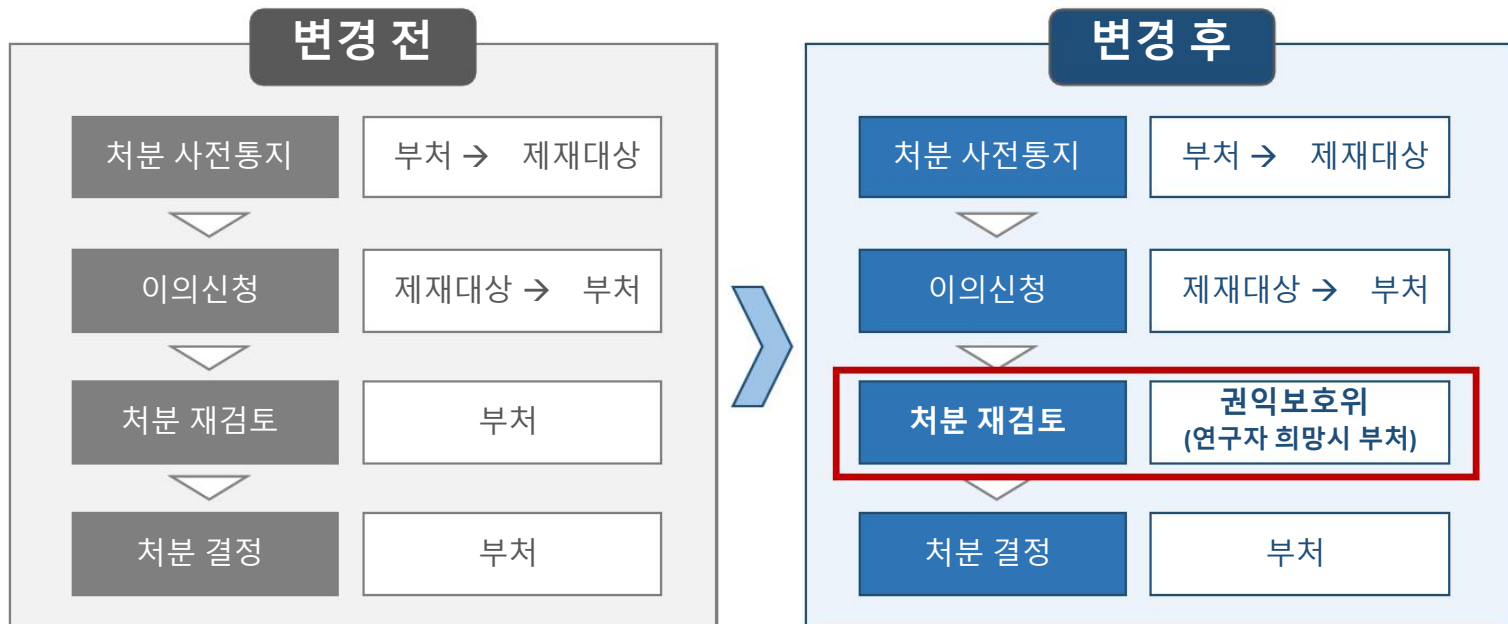
바람직한 연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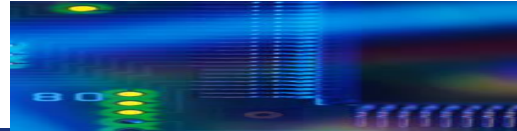
주체

연구현장

26. 제재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신설됩니다!

“ 억울/과도하게 제재를 받는 사람/기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변경 내용

세목 변경 내용



변경세목	변경 전(2019.7.31.) (공동관리규정_대통령령)	변경 후(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비고
가. 인건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좌동	
나. 학생 인건비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 (학사, 석사, 박사과정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사 1,000천원 이상 석사 1,800천원 이상 박사 2,500천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1.1.1.)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세목 변경 내용

변경세목	변경 전(2019.7.31.) (공동관리규정_대통령령)	변경 후(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비고
다. 연구시설 · 장비비	1. 연구시설 · 장비의 구입 · 설치비 2. 연구시설 · 장비 임차 ·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3. 연구시설 · 장비 운영 · 유지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 좌동	
라. 연구 재료비	1. 시약(試藥) · 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 · 관리비 2.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 작을 모두 포함한다) 비용	문구 수정

세목 변경 내용

변경세목	변경 전(2019.7.31.) (공동관리규정_대통령령)	변경 후(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비고
마. 연구 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6번→1번
	2.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 3번→2번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일부 항목 변경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4. 출장비 -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번→4번

세목 변경 내용



변경세목	변경 전(2019.7.31.) [공동관리규정_대통령령]	변경 후(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비고
마. 연구 활동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6. 연구실운영비 -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8번→6번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7. 연구인력 지원비 -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일부 항목 변경

세목 변경 내용

변경세목	변경 전(2019.7.31.) [공동관리규정_대통령령]	변경 후(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비고
마. 연구 활동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 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5번→8번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배,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2번→9번

세목 변경 내용

변경세목	변경 전(2019.7.31.) [공동관리규정_대통령령]	변경 후(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비고
바.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좌동	
사.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좌동	
아.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신설 대학 해당없음
자. 연구개발 부담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신설 대학 해당없음

세목 변경 내용

변경세목	변경 전(2019.7.31.) [공동관리규정_대통령령]	변경 후(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비고
(간접비) 차. 인력 지원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좌동	
(간접비) 카. 연구 지원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공통 비용 2. 사업단 운영비 3. 기반시설 · 장비 구축 · 운영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 좌동	
(간접비) 타. 성과활용 지원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3.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 좌동	

계상 불가 항목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제외)

계상 불가 항목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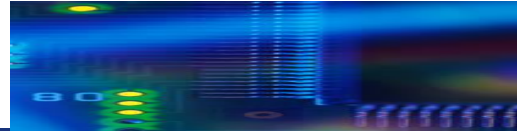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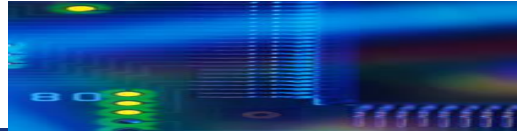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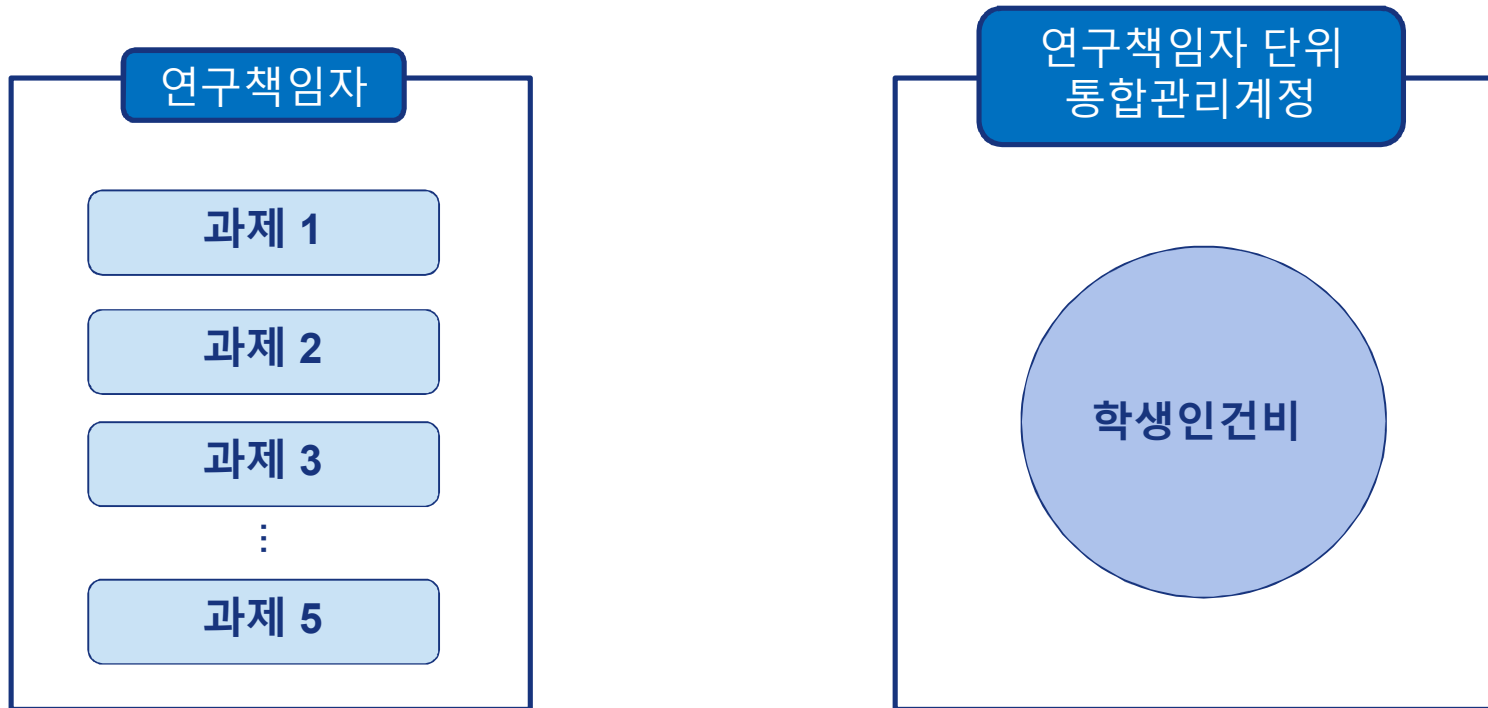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 정의 :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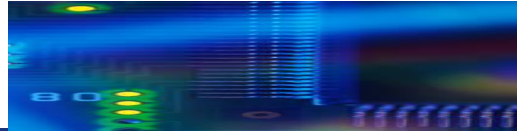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 지급 :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지정된 날짜에 학생연구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연구참여확약서 : 통합관리기관장-연구책임자-학생연구자 상호 협의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작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변경 불가
- 아주대학교 학생인건비 지급일
 - 정기지급일 :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추가지급일 : 월말
 - 지급일정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절대 금지



혁신법 제정으로 달라진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령 체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용어	학생연구원	학생연구자
	참여율	(학생인건비)지급률
	학생인건비 유용	학생인건비 부담회수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절차	계정책임자와 학생연구자가 협의하여 작성	통합관리기관장과 학생연구자가 협의하여 작성 (연구참여확약서 양식 변경)
지급률(참여율) 산정 시 연구장학금 등 포함 여부	참여율 계산 시 포함	연구장학금, 강사인건비, 단기근로소득 지급률 산정 시 제외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 인정 여부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



「연구수당」사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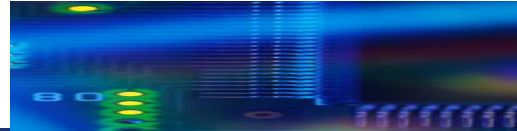
연구수당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하되,
협약체결 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 초과 불가
 -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증액된 경우 최초 협약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되,
한명의 연구자에게 70% 초과 지급 불가(참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는 제외)
 - 기여자평가 대상: 참여연구자 전체



아주대학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

평가지표별	참여도(적극성)	창의성	연구진행도	연구 성과기여 가중치
배점기준	30점	30점	40점	1~5점
평가기준	연구 운영회의, 학회, 세미나 참석 및 각종 행사 등의 참여도 및 적극성	연구 발전을 위한 개선안 제안,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창의적 연구기법 제안 등의 창의적인 마인드	논문, 특허출원·등록, 기술이전, 연구비 수주, 연차(중간)평가 준비 및 진행에 대한 평가	논문실적, Impact factor 수준, 특허출원·등록, 기술이전, 연구비 수주실적, 연차(중간)평가 결과 등에 대한 기여수준
평가결과 점수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도(30점)+창의성(30점)+연구진행도(40점)] x 성과기여 가중치(5점) = 500점으로 산정 - [참여도+창의성+연구진행도]의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는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 주요 평가내용에는 간략한 평가 주안점을 기록해야 함 - 지표별 배점기준 평가점수를 표기하고, 성과기여 가중치를 감안한 평가 총점을 산출함 - 종합평가 총점을 바탕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해야 함 (총점이 동일한 경우는 지급금액도 동일하게 산정해야 함) 			



연구수당 사용기준

-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은 **정산시 회수**
 - 연구수당지급액 \times (연구수당지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frac{20}{100}$)
 - 연구수당지급비율: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
 -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100% 지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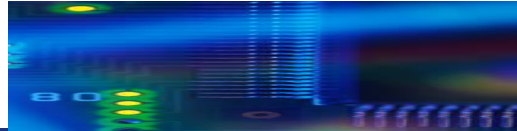
「간접비 회수」 기준





간접비

- 간접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 \times 고시비율 이내
(2021년 기준 본교 고시비율 : 26.7%)
-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간접비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을 초과한 경우, 간접비 회수
- 금액 계산 :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통합Ezbaro 적용사업

직접비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사용금액+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X100%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통합RCMS 적용사업

직접비집행비율 =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X100%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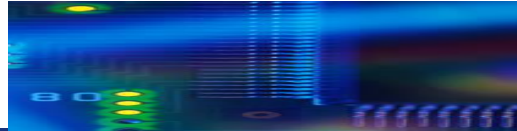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 : 202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일 : 202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규칙(시행일 : 2021.1.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시행일 : 202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규정집(상),(하)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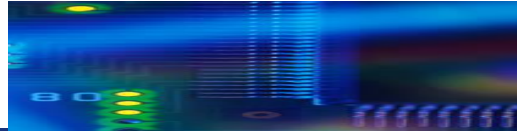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년 달라지는 연구제도



문의사항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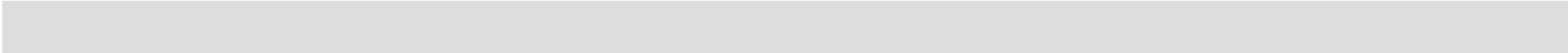
혁신법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관련
산학지원팀 김지혜	산학지원팀 이관용
☎ 031-219-3730	☎ 031-219-3737
jihyekim@ajou.ac.kr	leeky@ajo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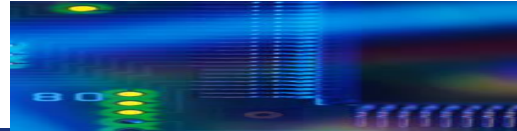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연구재단	IITP, BK	보건복지부	산업부	국토부 등 기타정부
정수현	이관용	이은미	최정아	손보연
☎ 031-219-1751	☎ 031-219-3737	☎ 031-219-1714	☎ 031-219-1763	☎ 031-219-1761
js@ajou.ac.kr	leeky@ajou.ac.kr	yuyi88@ajou.ac.kr	jeongah@ajou.ac.kr	sonboyeon@ajou.ac.kr





감사합니다

